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제1조 (목적)

현대건설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지역에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자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통하여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과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활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책)

현대건설은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전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생물다양성 보호에 앞장서며,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이행가능한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 1) 생물다양성 보호: 현대건설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의 보호지역에서 해당 국가와 지방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국제사회 보전지역 (IUCN Category Ia 등), 원시야생 온전한 지역 (IUCN Category Ib 등), 국제 단위 보호지역 (IUCN Category II 등), 자연 문화 유적지역 (IUCN Category III 등), 생물중/서식지 관리지역 (IUCN Category IV 등)
- 2) 심층적인 완화활동 실시: 현대건설은 사업수행 전 과정에 걸친 사업지 및 인근지역의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고 보호중을 식별하여 이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심층적인 완화활동(회피, 최소화, 복원 및 상쇄)을 이행하겠습니다.
- 3) NPI beyond NNL: 현대건설은 사업지에 대한 적극적인 생물다양성 보호활동을 통해 2050년까지 순 훼손 방지(NNL, No Net Loss) 수준의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을 이행하며, 순 영향 증가(NPI, Net Positive Impact) 단계로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4) 이해관계자 협업: 현대건설은 사업장 인근에서 필요 시 전문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복원-확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겠습니다,
- 5) 공급망 생물다양성 보호 확대: 현대건설은 사업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그 범위를 공급망 및 비즈니스 파트너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범위는 현대건설 국내외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 및 국내외 법인, 지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파트너사(합작회사 포함)의 임직원을 포함합니다. 생물다양성 보호 원칙의 준수는 현대건설 사업의 핵심요소에 해당됩니다. 당사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파트너사, 협력업체 및 납품업체에 엄정한 준수를 기대합니다.

제4조 (조치)

현대건설은 시공계획 수립 시점부터 생태계에 미칠 영향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지형 환경 및 생물 다양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설계와 건설 공법을 적용합니다.

- 1) 대체 서식지 마련: 수목 이식, 침사지 등을 활용한 생태습지 조성, 인공식물섬 설치, 자연형 하천 및 녹지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전개.
- 2) 보호장치 및 이동통로 설치: 소형동물 탈출로 및 유도펜스 설치, 오타쿠 방지망과 차단로 설정, 가로수 및 구조물을 이용한 이동통로 설치 등 현장 상황에 맞는 활동 적용.

- 3) 대안설계 고려: 공사지 변경, 진동저감 공법 사용, 교량기초 축소 등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에 대한 설계 변경.

제5조 (평가)

현대건설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생물다양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사업지 및 사업지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관련 성과를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아울러, 핵심 협력사(Critical Supplier)를 대상으로 공급망 지속가능경영 평가 등을 통해 협력사의 생물다양성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겠습니다.

제6조 (보고)

현대건설은 생물다양성 보호 현황을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 부칙

- ① 본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은 2022. 08. 16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